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83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영교·한정애

박 정ㆍ이성윤ㆍ이기헌

한민수 · 임미애 · 강유정

김병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소년은 담배제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담배 광고와 판촉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 고, 담배 진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. 그런데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 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,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9조 의4, 제28조 및 제34조).

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"을 "지정소매인"으로 한다.

①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지정소매인(이하 "지정소매인"이라 한다)은 영업소가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에 위치한 경우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담배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판매하여야 한다.

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중 "영업소"를 "영업소[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 내에 위치한 영업소는 제외한다]"로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제9조제2항"을 "제9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·판매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<u>&lt;신</u>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「담
<u>설&gt;</u>	배사업법」에 따른 지정소매인
	(이하 "지정소매인"이라 한다)
	은 영업소가 「교육환경 보호
	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
	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(「유아
	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
	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
	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
	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에
	위치한 경우 영업소 내부에 담
	배를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
	담배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
	보관하고 판매하여야 한다.
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	② <u>지정소매인</u>
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	
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	
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	
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	
된다.	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4(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	제9조의4(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
지 또는 제한) ① 담배에 관한	지 또는 제한) ①

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1. 지정소매인의 <u>영업소</u> 내부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(展示) 또는 부 착하는 행위. 다만, 영업소 외 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~ 4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

제28조(보고·검사) ① 보건복지 저 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, 제8 조제4항, 제8조의2, <u>제9조제2항</u> 부터 제4항까지, 제9조의2, 제9 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

1 <u>영업소[「교육</u>
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
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
구역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
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
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
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
제외한다) 내에 위치한 영업소
<u>는 제외한다]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28조(보고・검사) ①
제9조제1항

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#### ② (생 략)

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·1의2. (생략) <u><신 설></u>

 1의3. (생 략)

 2. ~ 4. (생 략)

 ② ~ ⑤ (생 략)

· ② (현행과 같음)
제34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
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
보관・판매한 자
<u>1의4.</u> (현행 제1호의3과 같음)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